##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9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김태흠·윤재갑·구자근

송영길 · 김회재 · 유경준

성일종 · 이명수 · 박덕흠

이 용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가하락 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공매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가치의 왜곡과 소액 투자자의 피해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8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80조의2 및 제180조의3 삭제 등).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 제목 중 "제한"을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본문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0조의2 및 제18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을 각각 "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을 "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로 한다.

제435조제1항 중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을 "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로 한다.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을 "제178조의2또는 제180조를"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을 "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39호 중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

으로 공매도"를 "공매도"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의2부터 제39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77호의2부터 제177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입공매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도계약이 체결된 차입공매도는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0조(공매도의 <u>제한</u> ) ① 누구	제180조(공매도의 <u>금지</u> ) ①
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	
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만, 제2</u>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u>서 삭제&gt;</u>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	
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	
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	② 제1항에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삭 제>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 다.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 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 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 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이하 이 장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발행주 식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 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 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 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삭 <u>제></u>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투자자로서 제1항에 따 른 보고의무가 있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순 보유잔고 산정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 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매도자의 구체적인 범위,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순보유잔고의 비율 등 보고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보고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 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삭 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 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 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 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 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 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 조 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 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 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 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 다.

- ② (생 략)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u>제178</u> 조의 <u>2</u>
또는 제180조를
·
② (현행과 같음)   ③

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④ ~ ⑧ (생 략)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 / 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

제178조의2 또는 제180
<u> 조를</u>
,
1.•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①
<u>제178조의2</u>
또는 제180조를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
고자 보호) ①

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의 정보교환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대하여 목적·범위 등을 밝혀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제178조의2 또는 제180
조를
<u>그 ㄹ</u>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의 정보교환 등) ① (현행과 같
<u>ㅇ</u> )
②
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 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 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 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 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 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4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7. (생 략) 1. ~ 47. (현행과 같음)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 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 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 8조<u>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u> 8조의2 또는 제180조를-----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 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하 자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49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8. (생략)

1. ~ 38. (현행과 같음)

39. 제180조를 위반하여 <u>상장증</u>	39
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	
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	<u>&lt;삭 제&gt;</u>
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	
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	
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	<u>&lt;삭 제&gt;</u>
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	
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	
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u>&lt;삭 제&gt;</u>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u>짓으로 공시한 자</u>	
40. ~ 49. (생 략)	40. ~ 4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의3. (생 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u><</u>삭 제>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

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 19. (생 략)

④ (생 략)

9. ~ 1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